7. 감 사 의 견 서

농협법 제71조 제1항(결산보고서의 제출, 비치와 총회 승인) 및 산동농협 정관 제139조 제1항(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)에 의하여 2022년 1월 17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(안)의 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합니다.

2022년 01월 25일

산 동 농 업 협 동 조 합

감 사 지 종 부 [인]

감 사 김 병 욱 [인]